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1197 |
|----------|---------|

제안일자 : 2016년 6월 16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의무규정과 전담추진반의 설치에 대한 시장의 조직권 침해 논란 여지가 있어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전담추진반의 명칭은 실무협의회로 수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1호).

나. 전담추진반을 실무협의회로 수정함(안 제8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호 중 “구성·운영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8조 제목 중 “전담추진반”을 “실무협의회”로, 같은 조 제1항 중 “전담추진반을”을 “실무협의회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전담추진반의 반장”을 “실무협의회의 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기반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주체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과 간선 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제2호의 유지관리 중에 미래의 수요변화 및 다양화

에 대응하여 노후기반시설의 제원이나 성능 및 효율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4. “장수명화”란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후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연장하기 위해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서 구조 및 내구 성능을 해당 시설물 전반에 대해 사전 정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6. “잔존수명”이란 시설물의 구조성능과 내구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 예측한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후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평가보고서 작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기반 시설(이하 ‘노후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별로 조사·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

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2.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와 미래예측
3. 내구성능의 변화와 현황
4. 구조성능의 변화와 현황
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과 현황
6. 잔존수명 평가
7. 만일의 붕괴나 운영중단 등에 따른 피해영향 평가
8. 성능개선 필요성 판단(필요시 기본계획 포함)
9. 장수명화의 필요성 판단(필요시 방안제시 포함)
10.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에 따른 미래가치
11. 준공이후 투입 재정내역 및 성능개선·장수명화를 위한 소요 재정규모
12.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 제6조부터 제7조의2까지에 의해 시행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간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

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기반시설의 관리 총괄현황
2.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기본계획
3.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4. 노후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개선·장수명화 관련 연구·개발 투자 계획
6.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성능개선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이하 ‘성능개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 시 관계 공무원
3. 기반시설 건설·유지관리등 관련 산업체·학교·연구기관 전문가
4. 기반시설 건설·유지관리등 관련협회 전문가
5. 기타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에 기여한 사람

③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관계부서의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시 관계부서의 국장과 시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간사 1명은 위원장이 관계부서 과장 중에 지명한다.

④ 성능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
2. 제6조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
3. 그 밖에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 성능개선위원회가 노후기반시설의 현장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시장은 원활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성능개선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시 산하 각 관계부서(시 산하 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는 장은 제7조제3항의 간사가 된다.

제9조(의회보고) 시장은 종합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갱신되는 경우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성능개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평가보고서 최초 작성) 제5조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 최초 작성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